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 [법률 제11789호, 2013.5.22., 제정]



환경부(화학물질과) 044-201-67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有害性)·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化学物質の登録及び評価等に関する法律

[施行 2015. 1. 1.] [法律第 11789 号、2013.5.22、制定]

環境部 (化学物質課)、044-201-6783

第 1 章 総則

第 1 条(目的) この法律は、化学物質の登録、化学物質及び有害化学物質含有製品の有害性(有害性)、リスク(危害性)に関する審査・評価、有害化学物質の指定に関する事項を規定し、化学物質の情報を生産・活用するようにすることで国民の健康及び環境を保護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